##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00 발의연월일: 2025. 2. 4.

발 의 자:김선교·김상훈·최보윤

김위상 • 구자근 • 서천호

송석준 · 정동만 · 최수진

김성원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학물질을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문구상 "화학적으로"의 수식 범위가 "변형"에만 한정되는지 "추출 또는 정제"까지 포함하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학물질을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변형(화학적 변형에 한 함)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으로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생활화 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법률 제 호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를 "변형(화학적 변형에 한함)시키거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	1
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상	
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u>화학</u>	<u>변형</u>
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	(화학적 변형에 한함)시키거
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u> 나</u>
	,
2. ~ 13. (생 략)	2. ~ 13. (현행과 같음)